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박군택 · 박정 · 양부남

허영 · 황명선 · 정진욱

추미애 · 한준호 · 민형배

전진숙 · 김상욱 · 조인철

박홍배 · 정준호 · 박정현

장경태 · 안도걸 · 윤후덕

박지원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①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각 항목별 보상금은 합산하되 그 합산액이 별표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이미 배상 판결을 받거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에서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5조의2 관련)

피해 내용		보상금
가. 사망 등	사망	400,000,000원
	행방불명	350,000,000원
나. 신체장애	1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	315,000,000원
	2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	315,000,000원
	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	315,000,000원
	4급: 노동능력 상실률 90%	285,000,000원
	5급: 노동능력 상실률 80%	255,000,000원
	6급: 노동능력 상실률 70%	225,000,000원
	7급: 노동능력 상실률 60%	195,000,000원
	8급: 노동능력 상실률 50%	165,000,000원
	9급: 노동능력 상실률 40%	135,000,000원
	10급: 노동능력 상실률 30%	105,000,000원
	11급: 노동능력 상실률 20%	75,000,000원
	12급: 노동능력 상실률 15%	60,000,000원
	1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	45,000,000원
	14급: 노동능력 상실률 5%	30,000,000원
다. 질병 등	기타 등급	10,000,000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300,000,000원
라. 성폭력 피해	200,000,000원	
마. 구금	기본 10,000,000원에 구금일당 3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바. 수배	기본 5,000,000원에 수배일당 1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사. 유죄판결	유죄판결	30,000,000원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15,000,000원
아. 해고 등	해고	30,000,000원
	정직 이하	15,000,000원
자. 학사징계	제적, 정학	30,000,000원
	근신	15,0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5조의2(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u> ①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각 항 목별 보상금은 합산하되 그 합산액이 별표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넘지 하니하도록 한다.</p> <p>②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이미 배상 판결을 받거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에서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다.</p>